## 19. 기계가공업체 근로자에서 발생한 비호지킨 림프종

성별 남 나이 63세 직종 파이프가공 업무관련성 낮음

- **1. 개요:** 근로자 이○○는 1997년 7월 ○○공업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속품을 절단, 용접, 도색하는 업무를 하던 중 2004년 11월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진단받았다.
- 2. 작업환경: 근로자 이○○는 1997년 7월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속품을 절단, 용접, 도색하는 업무를 하였다. 사업장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주로 엔진과 기어를 연결하는 파이프, 볼트를 생산한다. 근로자의 작업내용은 쇠 파이프를 절단기로 절단한 후 끝부분에 부품을 끼워 CO₂ 용접을 하고, 그 후 파이프를 도색하여 건조시키는 작업이었다. 도색작업은 큰 통에 페인트와 신너를 100 리터 가량 부어 놓고 파이프를 고리에 걸어 담갔다가 꺼내어 도색하는 방식으로 작업하였으며, 근로자는 모든 작업에서 마스크 등의 보호구 없이 작업하였고 배기통과 후드도 각각 2003년과 2004년에 들어왔다고 한다. 용접 및 도색 모두 평균 한 달에 800-1000개의 쇠파이프에 대해 작업하였으며, 근로자는 일주일에 1-2일은 하루 종일 용접만 하고 2-3일은 도색만 하며, 나머지는 절단작업을 하는 식으로 업무를 하였으며, 입사 이후 작업내용은 큰 변화가 없었다. 근로자 이○○이 도색 작업 시 사용하였다고 사업자측이 주장하는 물질에 대하여 원시료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너 및 도료에서 벤젠은 검출되지 않았다.
- 3.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과거 질병으로 입원한 적은 없었으며, 2002년경부터 기관지염으로 내과진료를 수차례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다. 가족 중 암환자는 없었으며, 음주는 주당 소주 3-4병 마셨으나 4년 전부터 금주하고 있다고 하며, 흡연은 하루 한두 개비 피는 정도였으나 4년 전부터 금연한다고 하였다. 근로자는 일반건강진단만 받았으며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건강진단 결과에서 혈압관리, 간기능 이상 외에 특이 소견은 없었다.
- 4. 결론: 근로자 이〇〇의 비호지킨 림프종은
- ① 7년간의 도색 작업 중 유기용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진단되었으나.
- ② 현재 취급하는 도료와 신너에서는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 ③ 과거 본인 취급한 도료와 신너가 현재와 다른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 ④ 유기용제 노출기간이 벤젠에 의해 비호지킨 림프종을 유발하기에는 불충분하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